도시형캠퍼스 설립·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해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8623

발의연월일: 2025. 3. 4.

발 의 자:이해식・박용갑・박상혁

박정현 · 신정훈 · 김영호

황명선 · 윤준병 · 서영석

민병덕 • 서영교 • 염태영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저출산으로 인해 전체적인 학령인구는 감소하고 있으나, 특정 지역은 오히려 학생 수가 증가해 학교 과밀화, 원거리 통학 등으로 학 생들의 교육여건이 악화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.

도시형캠퍼스는 이러한 변화에 맞춰 학교 및 학교 시설 운영의 유연화와 다양화를 도모하기 위해 새롭게 도입된 학교 유형이나, 설립 및 운영에 대한 국가의 재정 지원 근거가 없어 교육청 예산으로 충당해야 하는 실정임.

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형캠퍼스의 원활한 설립·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 으로써 학생의 교육환경 개선에 이바지하려는 것임(안 제13조 신설).

법률 제 호

도시형캠퍼스 설립·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법률 제20665호 도시형캠퍼스 설립·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장(제13조)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장 보칙

제13조(국가의 재정적인 지원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형캠퍼스의 원활한 설립·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법률 제20665호 도시형캠퍼스 설	법률 제20665호 도시형캠퍼스 설		
립・운영에 관한 특별법	립·운영에 관한 특별법		
<u> <신 설></u>	<u>제4장 보칙</u>		
<u> <신 설></u>	제13조(국가의 재정적인 지원) 국		
	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형캠		
	퍼스의 원활한 설립·운영을		
	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정적 지		
	원을 할 수 있다.		